

북한인권법

의안번호 142

발의연월일: 2008.07.04

발의자: 황우여, 한선교, 유기준, 신지호, 조전혁, 김소남, 이경재, 김효재, 구본철, 이한성, 송영선, 정양석, 안상수, 이종혁, 박상돈, 이화수, 이정선, 김성희, 현경병, 윤상현, 이학재, 진성호, 조진형 의원 (23 명)

법률 제 호 북한인권법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인권”이란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및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국군포로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교류와 결합 등 인권현안을 말한다.
2. “국군포로”란 6.25 전쟁기간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의무수행 중 북한에 포로로 잡혀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억류되어 있거나 억류 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
3. “납북자”는 6.25 전쟁 중 또는 종전 후 북한에 의한 위협, 납치, 납포 등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억류되어 있거나 억류 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
4.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주민으로서 북한지역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내에 입국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 3 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1) 정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및 이산가족의 교류와 결합을 대북협상 및 지원에 있어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3)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한 민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북한주민의 생존을 돕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북한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1)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2)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회의 주재 하에 국무총리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통일부장관은 제 2 항의 협의 전 제 7 조에 따른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호-북한인권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방안,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방안, 북한이탈주민의 현지보호 및 국내입국 방안,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주민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전달 및 확산방안,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5)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북한인권대사) 1) 세계 각국정부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관하여 활동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둔다. 2)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활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북한인권대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북한인권자문위원회) 1) 북한인권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둔다. 2)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북한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3) 북한인권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 인은 국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4)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5) 그 밖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북한 인권기록보존소) 1)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2)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1)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 10 조부터 1 제 37 조까지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10 조(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1) 통일부에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국군포로,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둔다. 2)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북한 이탈주민의 인권보호) 1)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신변안전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이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응급보호조치를 취하고 인도적 처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12 조(인도주의적 지원의 원칙) 1) 정부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 공급과 지속적인 감시가 확보되고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아니한다는 보장 아래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1)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방송매체의 보도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정보접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매체 등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연 1 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북한인권교육) 1)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 제 4 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북한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북한인권 및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16 조(재정상의 조치) 1) 정부는 이 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및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북한인권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 17 조(권한의 위임, 위탁) 1)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할 수 있다. 2)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있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생략)